

교통물류연구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교통물류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교통물류연구소(이하본 연구소라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라 함)내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교통물류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통분야의 이론 및 응용에 관한 연구
2. 물류분야의 이론 및 응용에 관한 연구
3. 교통 물류 분야의 고급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체 연구원의 계속교육
4. 정부·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수행
5. 기타 교통·물류분야의 관련 연구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조직)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연구소에 연구관리부, 정보관리부, 교통·물류 연구부를 둔다.
- ② 각 부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.
 1. 연구관리부는 시설의 관리, 서무회계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
 2. 정보관리부는 각종 교육의 지원, 출판, 섭외, 자료의 수집관리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
 3. 교통물류연구부는 교통·물류 분야의 이론 및 응용 연구를 수행

제5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연구소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, 관련연구기관 및 산업체 인사 등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간사는 소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,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3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 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소장)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 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, 초빙연구위원, 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- ③ 초빙 연구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또는 업체에서 추천한자 중 소장이 위촉한다.
- ④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중 소장이 임명한다.
- ⑤ 보조연구원은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중 소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자문위원) 연구소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대학교원,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인사 외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,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
제 3 장 제 정

제9조 (연구비 관리)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연구비 관리 규정에 준한다.

제10조 (규정준용) 이 규정에서 준용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1조 (운영세칙) 기타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